

제243회 임시회
2005. 9. 14 (수)

제 안 설명서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 과

가.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 제안일자 : 2005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 2005년 9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자구를 표기하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0,000원에서 1일 11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재학)

-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하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조례제명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0,000원에서 1일 110,000원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 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1일 80,000원” 을 “1일 1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31, 2003. 7. 18>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 12. 30, 2003. 12. 18, 2005. 4. 27>

[별표 6] <개정 2005. 8. 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범위
시 · 도의회 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원	일 100,000원 이내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등의지급에관한 조례</u>	<u>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32조 및 <u>동법시행령</u>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u>지방자치법</u> 」 <u>동법 시행령</u>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일 <u>80,000원</u> 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회기수당) ① <u>110,000원</u> ② (현행과 같음)